

# 「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 첨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9. 8.
- 회부일자 : 2025. 10. 13.
- 상정일자 : 2025. 10. 13.

### 2. 제안이유

- 기존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내용에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 - (기존) 「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」
  - (변경) 「평창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」
-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관한 중기계획수립 · 시행(안 제3조)

- 편의시설의 설치 관련(안 제4조 ~ 제5조)
-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(안 제6조)
- 군수의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(안 제7조)
- 한국수어 통역사 교육 등(안 제8조)
- 법인 · 단체 등에 대한 행정지원(안 제9조)
- 민간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 권고(안 제10조)

#### 4. 검토의견

##### 가. 관련 근거

- 「한국수화언어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 · 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·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· 방송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 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 나. 입법의 취지

-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과 더불어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.

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중기계획의 수립 · 시행)에서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 · 시행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4조(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) 및 안 제5조(편의시설의 설치 등)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군에서 제작 · 송출하는 방송물에 한국수어 및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6조(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)에서 군이 주최 · 주관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(한국수어 활성화)에서 한국수어 및 농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규정함.
- 안 제8조(한국수어 통역사 교육 등)에서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

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9조(지원 등)에서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0조(민간운영시설의 권장)에서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청각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련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입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불임 관계 법령

### □ 한국수화언어법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·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# □ 장애인복지법

**제22조(정보에의 접근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·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·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편의시설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